

든든한 노후준비?

평생 전세통장?

노후준비와  
평생 전세!  
연금저축계좌는  
가능합니다.



# 연금저축계좌는 무엇일까요?

노후준비와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 
자산관리 통장

가입대상	연령 등 제한 없음
납입한도	연간 1,800만원(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과 합산)
연금수령요건	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,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
세액공제	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.2%의 세금감면
인출 시 세금	연금수령주1) 시 연금소득세 5.5~3.3% 연금외수령주2) 시 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

※ 주1)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혹은 해지 시 연금소득세 5.5~3.3%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, 가입자 사망 or 해외이주, 파산,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 
주2) 연금외 수령이란 연금수령 전 인출/해지금액 및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연금수령액을 의미  
연금수령한도: 연금계좌평가금액/(11-연금수령연차)\*120%, 2013.3.1 이전 가입자는 수령연차 6년부터 시작

# 연금저축계좌가 좋은 이유 ①

## 적립 및 운용



### 세액공제

연간 최대 52만 8천원

(연봉 5500만원 이하 66만원,  
연봉 1억 2천 초과 39만 6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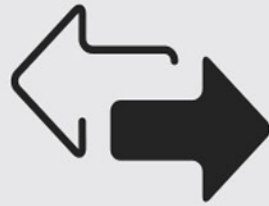
### 세금이연 인출 전 비과세

(퇴직금 직접 입금 후 세금이연 가능)

### 분산투자

# 연금저축계좌가 좋은 이유 ②

중도인출



**자유로운출금**

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내 (비과세)

# 연금저축계좌가 좋은 이유 ③

## 연금수령



### 낮은 세율

55세~69세: 5.5%, 70~79세: 4.4%,  
80세 이상: 3.3%

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%만 납부

### 분리과세

연간 1200만원한도 연금소득세  
(공적연금액 제외)

#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활용하세요!

## [노후준비]



세금감면: 매년 납입액x 13.2% ▶ **52만8천원**

인출 전까지 세금 없어 노후자금 극대화 가능

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:연령 따라 5.5%~3.3%



## [평생 절세통장]



납입: 연간 최대 1,800만원

계좌단위 과세: 과세금액 축소(손실상계)

자유로운 출금과 16.5% 분리과세혜택(연금외 수령)

해외 및 채권투자 통장으로 활용

# 아직도 연금저축개별펀드를 보유 중 이시라면?

저축계좌(통장)로 변경하면 찾아오는 혜택 ①

과세금액 축소 (손익통산)

연금저축계좌	손익
--------	----

A 펀드	-300 만원
------	---------

B 펀드	200 만원
------	--------

과세대상금액	0 원
--------	-----

연금저축펀드	손익
--------	----

A 펀드	-300 만원
------	---------

B 펀드	200 만원
---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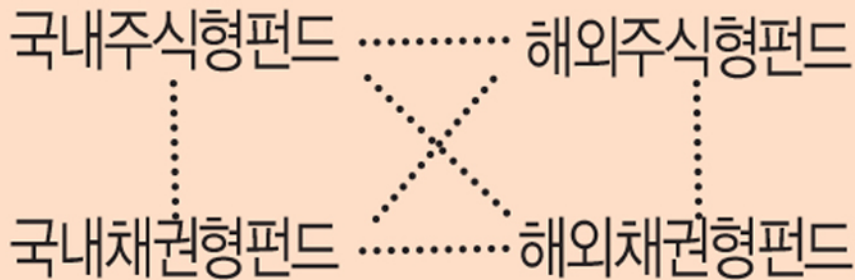
과세대상금액	200 만원
--------	--------

# 아직도 연금저축개별펀드를 보유 중 이시라면?

저축계좌(통장)로 변경하면 찾아오는 혜택 ②

분산투자 및 자유로운 리밸런싱

## 연금저축계좌



## 연금저축펀드

단일펀드 100%



# 아직도 연금저축개별펀드를 보유 중 이시라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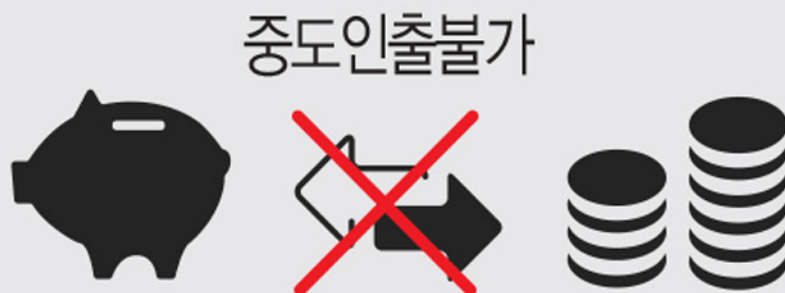
저축계좌(통장)로 변경하면 찾아오는 혜택 ③

자유로운 인출

## 연금저축계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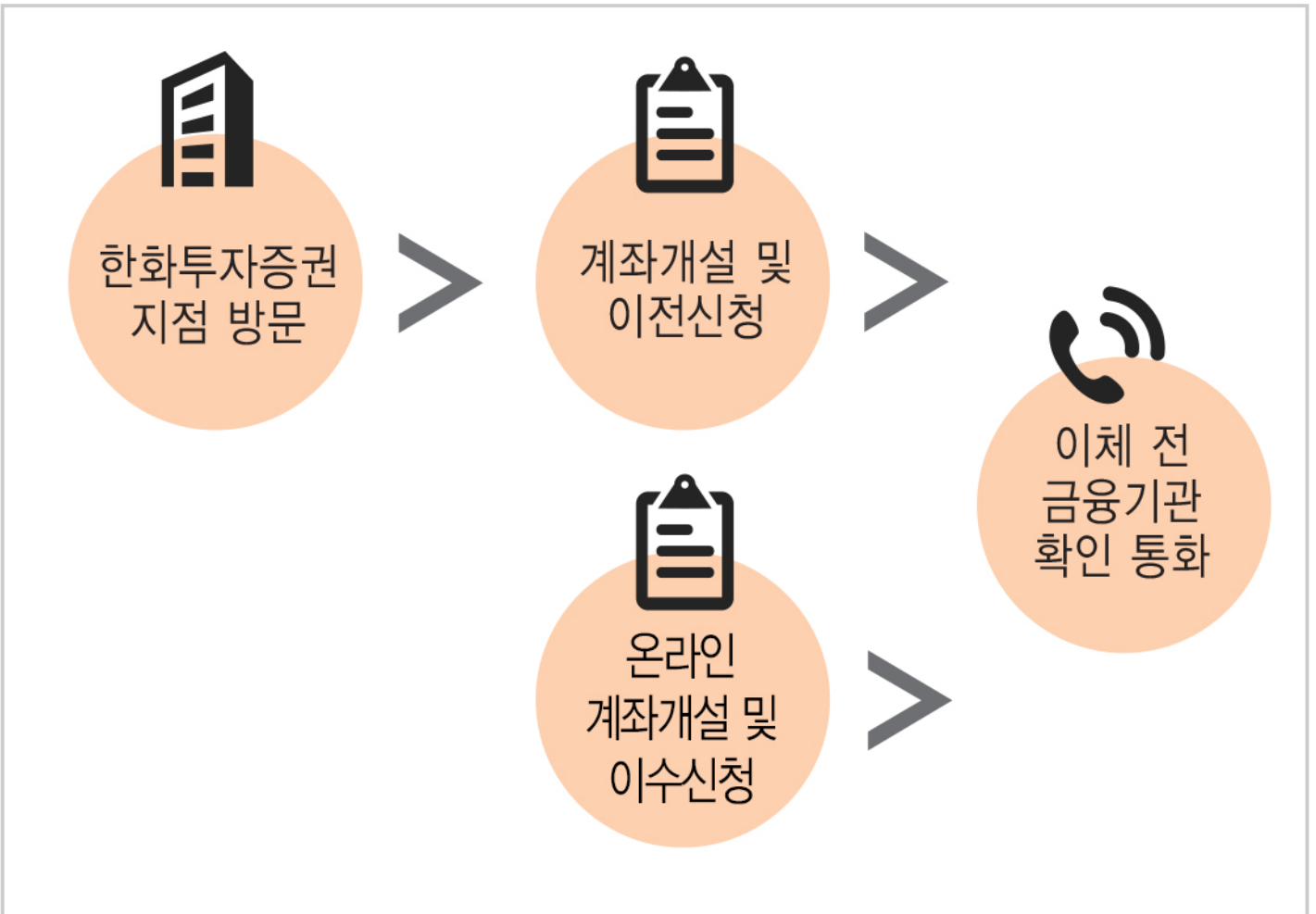
## 연금저축펀드



# 연금관리 전문가를 찾으신다면?

한화투자증권으로 이전해서 관리 서비스를  
받으세요!

[간편한 이전]



# 유의사항

-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보수,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비용,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 분리과세)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